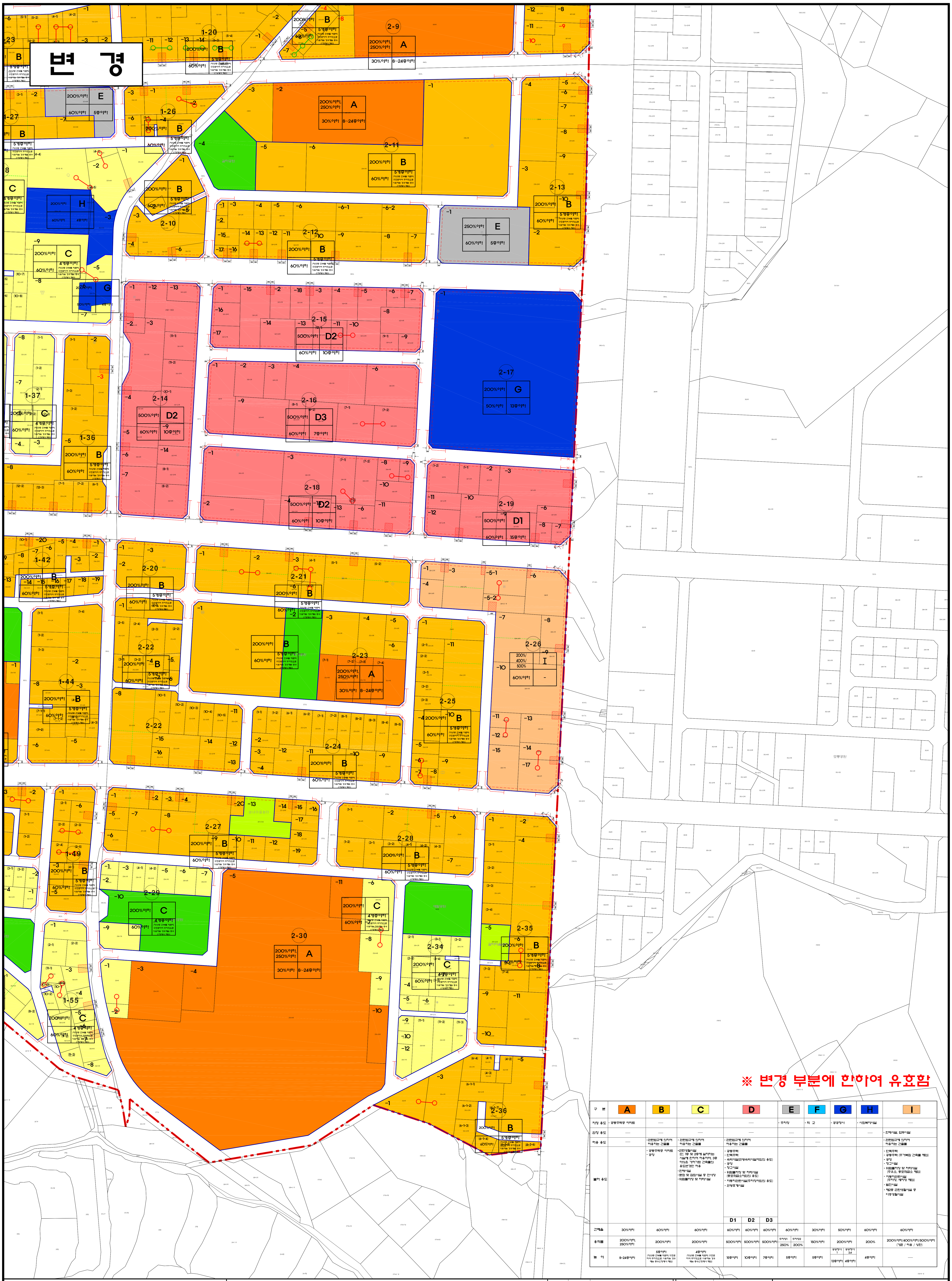

변 경

※ 변경 부분에 한하여 유효함

구 분	A	B	C	D			E	F	G	H	I
				D1	D2	D3					
지정 용도	• 공동주택중 아파트	—	—	—			• 주차장	• 학 교	• 공공청사	• 사회복지시설	—
권장 용도	—	—	—	—			—	—	—	—	• 판매시설, 업무시설
허용 용도	—	• 관련법규에 의하여 허용하는 건축물	• 관련법규에 의하여 허용하는 건축물	• 관련법규에 의하여 허용하는 건축물			—	—			• 관련법규에 의하여 허용하는 건축물
불허 용도	—	• 공동주택중 아파트 • 공장	• 근린생활시설 (단, 1층 및 2층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며, 3층 이상은 기허가된 건축물의 용도변경만 허용) • 판매시설 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	• 공동주택 • 단독주택 •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이외의 용도) • 공장 • 창고시설 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(총포취급소이외의 용도) •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이외의 용도) • 관광휴게시설			—	—	—	—	• 단독주택 • 공동주택 (주거복합 건축물 제외) • 공장 • 창고시설 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(주유소, 총포취급소 제외) • 자동차관련시설 (주차장, 세차장 제외) • 발전시설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
건폐율	30%이하	60%이하	60%이하	60%이하	60%이하	60%이하	60%이하	30%이하	50%이하	60%이하	60%이하
용적률	200%이하, 250%이하	200%이하	200%이하	500%이하	500%이하	500%이하	주차장1 250% 주차장2 200%	150%이하	200%이하	200%	200%이하/400%이하/500%이하 (기준 / 허용 / 상한)
높 이	8-24층이하	5층이하 (지상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)	4층이하 (지상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)	15층이하	10층이하	7층이하	5층이하	5층이하	공공청사 1 13층이하 공공청사 3,4 4층이하	4층이하	—

도시관리계획(연희1 · 2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고시도

가구 및 획지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
■ 범 례

- 지구단위계획구역
- 가구경계선
- 건축한계선
- 대지분할가능선(권장)
- 차량출입불허구간
- ▨ 공동주차(권장)
- ○—○ 공동개발(권장)

용적률	용도
건폐율	높이

구 분	작 성 자	입안 및 결정권자	
		1차확인자	2차확인자
소 속	(주)도화	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	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
직 위	전 무	-	도시계획 담당
직 명	도시계획 기 술 사	지방시설 주사	지방시설 사무관
성 명	정 현 식	나 승 일	이 철
확 인 인			

지 정 권 자	인 천 광 역 시 장
지 정 일 자	2017년 01월 16일
고 시 년 도	2017년 01월 16일
고 시 번 호	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-10호
작 성 자	인 천 광 역 시 장
작 성 년 월 일	2017년 01월 16일
저작권소유 및 발행자	인 천 광 역 시 장

N

S = 1/1,500

0 20 60 120 (m)